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대신대학교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의 조사 연구 및 정비를 함에 있어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에 의하여 임명 한다.

1.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분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단기 종합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제 및 학사행정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구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정비
6. 교육관계 법규 및 규정자료의 조사, 연구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하며,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